

2020년도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I.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1757호, **2020년도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2020년 8월 12일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위원회로 회부된 것임

II.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

1. 제안이유

- 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2020년도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19년 기금 결산결과 예치금 수입 증가에 따라 재무활동비를 조정, 당초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였으며,
- 나. 코로나19 위기상황이 확산됨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 특별용자 및 만기연장 확대, 사회적경제기업 종사자 용자, 불안정고용 노동자 소액용자 계획을 반영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추가 변경하였음.

다. 수입·지출계획 변경내용

(단위 : 백만원)

수입 계획						지출 계획					
구분	당초 (A)	변경			증 감 (B-A)	구분	당초 (A)	변경			증 감 (B-A)
		1차	2차	3차 (B)				1차	2차	3차 (B)	
계	25,593	29,819	26,819	29,819	4,226	계	25,593	29,819	26,819	29,819	4,226
전입금	5,800	5,800	5,800	8,800	3,000	사회적경제기업 용 자	11,500	11,500	15,500	15,500	4,000
						소설하우징 용 자	3,500	3,500	3,500	3,500	-
용자 이금 자	374	374	374	374	-	사회적경제기업 중사자용자	-	-	1,000	1,000	1,000
용자 회금 수	11,427	11,427	8,427	8,427	△3,000	임팩트투자 출 자 금	1,000	1,000	1,000	1,000	-
						민간자산 클러스터	5,000	5,000	-	-	△5,000
이수 자입	140	140	140	140	-	불안정노동자 소액용자	-	-	-	3,000	3,000
기수 타입	100	100	100	100	-	비용자성 사업비	250	992	1,112	1,272	1,022
						관리 금비	200	200	200	200	-
예치 회금 수	7,752	11,978	11,978	11,978	4,226	예치 지출 금	4,143	7,627	4,507	4,347	204

○ 수입계획 : 255억 9,300만원 → 298억 1,900만원 (증 42억 2,600만원)

<증액>

- 불안정고용노동자 소액용자 전입금 : 58억원 → 88억원 (증 30억원)
- '19년 결산결과 반영 예치금 회수 : 77억 5,200만원 → 119억 7,800만원
(증 42억 2,600만원)

<감액>

- 용자금 회수 감소 : 114억 2,700만원 → 84억 2,700만원 (△30억원)

Ⅲ. 검토의견

-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19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잉여금을 수입계획 중 예치금회수(42억 2,600만원)와 지출계획중 **재무활동**의 예치금(34억 8,400만원)과 정책사업인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중 일부 단위사업에 나머지 7억 4,200만원을 기반영하고, 동일 정책사업내 개별 단위사업에 대한 지출계획을 증·감하고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임
- 관련 법령은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 바,
 - 동 기금은 기금운용부서가 지난 3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난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여유재원(42억 2,600만원)을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에 이미 반영한 것으로
 - 심의위원회의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의하여 지출계획중 재무활동(예치금)은 당초보다 84.1%, 34억 8,400만원 증가된 바 있어 사후적이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로부터 의결을 받고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행정안전부의 기준에는 전년도 결산에 따라 기금 예치금 항목만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없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도록 정하고 있고,
 - 동 기금의 경우에도 지난 3월, 기금운용부서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난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여유재원을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에 적법 처리한 것으로 확인 되는 바
 - 결산결과에 따른 여유재원은 관련 기준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통해 수입 및 지출계획에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의회의 의결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제출된 안건의 주요내용(나)는 동일 정책사업내 일부 단위사업에 대한 지출계획을 증·감 계획하는 것인 바,
 - 동 기금의 정책사업은 ①재무활동(예치금)과 ②**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으로 구성되어 있고, 제출된 안건의 주요내용(나)와 같이 일부 단위사업에 대한 지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라 하여도 정책사업인 ②**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의 지출금액 변동비율이 18.8%에 해당되어 관련 기준이 정하는 의회의 의결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안으로 판단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금운용부서로서는 지난 '19회계연도 결산심사시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정책사업”에는 재무활동, 행정운영경비까지 모두 포함됨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있어 일부 개선이 필요한 점이 지적된 사례가 있어 결산심사시 지적된 문제점을 개선하여 시의회의 의결취지를 존중하고자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관련 법령에는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고, 동 계정의 지출계획중 정책사업은 ①**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②재무활동(예치금) 뿐임에도 불구하고,
 - 제출된 안건에 기재된 지출계획은 정책사업이 아닌 단위사업을 기재한 것은 물론 세부사업보다도 하위의 편성목을 혼재하여 작성함으로써 정책사업을 파악하는데 혼선을 초래하는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사업명의 경우에도 당초 기금운용계획에 기재하여 의회로부터 의결·확정된 내용과는 달리 일부 변형하거나 생략하는 등 의회로부터 심사·의결 받고자 제출하는 안건이 오히려 안건심사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어 향후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